

인쇄물 협력업체 선정 공고(안)

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인쇄(경인쇄·옵셋)물에 대한 연간 인쇄물 협력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신청자격

- 가.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인쇄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서울지역에 주사업장과 적정 인쇄시설을 보유한 업체
- 나. 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1억원 이상의 인쇄물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
- 다.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
- 라. 우리원이 제시한 인쇄단가를 수용한 업체

2. 등록신청서 접수

- 가. 접수기간 : 2009.7.17.(금) ~ 2009.7.24.(금) 17:00 까지
- 나. 접수장소 : 우리 연구원 행정지원실 (우편접수 가능)
- 다. 제출서류
 - 1) 등록신청서 1부
 - 2) 사업자등록증 1부(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)
 - 3) 납품실적증명서 1부
 - 4) 인쇄시설증명서 1부
 - 5) 인감증명서 1부
 - 6)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
 - 7) 보유시설 사진(전체)
 - 8) 최근 제작 인쇄물 2종 (흑백/컬러 각 1종)

3. 업체등록 심사

- 가. 서류심사 : 제출된 서류를 중심으로 심사기준에 따라 복수 업체선정
- 나. 현장실사 : 서류심사에서 선정된 업체의 보유시설을 중심으로 실시하여 최종 등록업체 선정 후 등록계약 체결

4. 업체등록 및 인쇄 단가계약 체결

- 가. 대상업체 통지 : 심사결과 합격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
- 나. 계약 체결일자 : 2009. 8. 5.(수) ~ 8. 6.(목)
- 다. 계약 내용
 - 1) 계약기간 : 2009. 8. ~ 2010. 8.(1년간)
 - 2) 계약단가 :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의 80%

5. 유의사항

- 가.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부정당업체로 처리되어 등록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(최종 선정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사실 확인 예정)
- 나.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우리 연구원의 등록조건 및 유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,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.
- 다. 기타 문의 사항은 우리 연구원 행정지원실(☎02-3460-515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: 1. 등록신청서(양식) 1부.
2. 서류심사기준 1부.

2009. 7. .

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

<붙임 1>

등 록 신 청 서				처리기간 즉 시
※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				
신 청 인	상 호		사업자등록번호	
	주 소			
	대 표 자		주민등록번호	
	E-mail		전 화 번 호	유선 : H.P :
신청 개요	광고 번호	한국형사정책연구원 광고 제2009- 호	등록마감일시	2009. . . 17:00
	건 명	인쇄물 협력업체 선정 및 등록계약		
등록 조건	단가적용 :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의 80% 수용 (가 , 부)			
대 리 인	본건 등록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. 성 명 : 주민등록번호 :	사 용 인 감	본건 등록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. 사용인감 : (인)	
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원의 인쇄업체 등록 및 인쇄단가 계약을 위하여 귀원이 정한 제반조건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을 신청합니다. 붙임서류 : 1. 사업자등록증 1부 2. 납품실적증명서 1부 3. 인쇄시설증명서 1부 4. 인감증명서 1부 5.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6. 보유시설 사진 7. 최근 제작 인쇄물 2부(흑백/컬러 각 1종) 2009. 7. . 신청인(대표자) (인) <u>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귀하</u>				

<붙임 2>

□ 서류심사기준 □

구 분		기 준	비고(제출서류)
사업장위치		수도권지역	- 사업자등록증 ¹⁾ - 인감증명서 - 사업자등록증
이행 능력	납품실적	1억원 이상	- 납품실적증명서 ²⁾
	시설현황	자체보유시설 현황	- 인쇄시설증명서 ³⁾ - 보유시설 사진 - 최근 인쇄물 2종(흑백/컬러)
등록 조건	계약단가	조달청 인쇄기준 요금의 80% 적용	- 등록신청서에 수용여부 표기
신용 상태	세금 납부 여부	세금 완납	- 국세·지방세 완납 증명서 ⁴⁾

※ 1) 사업자등록증 : 원본 또는 사본(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반드시 날인)

2) 납품실적증명서 : 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정부출연연구기관에 1억원 이상의 인쇄물을 납품한 실적증명원 원본

3) 인쇄시설증명서 : 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인쇄시설증명원

4) 국세·지방세완납증명서 : 공고일 현재 유효한 국세, 지방세 완납증명서